

대전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209944(본소), 2023나209951(반소) 판결
[공사대금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등]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209944(본소), 2023나209951(반소)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4. 21 선고 2022가소798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로

담당변호사 이현

변론종결 2024. 3. 28.

판결선고 2024. 4. 18.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4. 21. 선고 2022가소798(본소),
2022가소12333(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396,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9/1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8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반소: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공사대금의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공사 과정에서 우편함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폐기물 미처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반소청구를 하였다.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모두 인용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반소청구 중 폐기물 미처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반소청구 중 위와 같이 인용된 폐기물 미처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21. 4. 22.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C 지상 주택의 지붕공사를 대금 16,500,000원에 도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지붕 설치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기존 지붕의 철거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처리비용 3,443,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1,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공사계약 당시 ‘스레트 철거 후 한쪽에다 쌓아 둘 것’이라고 약정한 사실, 위 주택이 소재한 대전 유성구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석면 슬레이트가 사용된 지붕 철거 및 처리를 대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어서는 안 되고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한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60299 판결 등 참조).

위 계약의 문구 자체에 의하더라도 철거된 스레트의 처리는 원고가 실시할 공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배경까지 종합하여 보면, 철거된 스레트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까지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처리하게 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별도로 처리하기로 하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철거된 스톤 처리가 계약한 공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의 이 부분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396,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해당 부분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윤지숙, 판사 신일수, 판사 설승원